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인 42-829 (전화번호)	전결규정	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시 감		
시행일자	80.11.14		
보존년한	80.11.14		
보조기관	제2부서장	전결	
	도시계획국장	80.11.14	
	도시계획1과장	80.11.14	
기안책임자	이동상	80.11.14	
경유	각안참조	발신	통제
수신	각안참조	시	제
참조		신	일괄기안 4건
제목	도시계획 시설(공원) 신설공사		
제안	제1안) 세부결재		
<p>1. 당시 관이 도시계획 시설(공원)인 관악산 자연공원은 건설부 고시 제159호(1977.7.1)로 결정된 이후 법상 지적승인 석포기간에 지적승인 도시 계획형으로 도시계획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약정 실효되었기 문 점하여 과학 실험 고시하고, 동시에 건설부에서 현재 결정중인 있는 도시계획 시설(공원) 신설로 실효된 공원이 기 결정된 것으로, 법안과 관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도시계획 시설(공원) 신설공사			
종류	종류	면적(㎡)	비고
공원	공원	20,619,171	실효조
공원	공원		실효조
공원	공원		실효조
<p>첨부 : 도공서부, 도시계획법 제14조,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</p>			
<p>도시계획법 제14조,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</p>		<p>도시계획법 제14조,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</p>	

실효면적조정(건설부)

건고138

20,570,000

장흥고·건고147

-15,543

석울대아파트·건고314

-7,286

고지대추가·건고418

+72,000

계 20,519,171 (실효면적)

183-1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공원)중 관악산 자연공원은 건
 설부 고시 제139호(1977.7.2)로 결정된 이후 가려승인 절차가 완료되었
 기 도시계획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의거 심도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1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
 및 이해 관계인에게 분이기 합니다.

1980.

서울특별시장

2. 심도공문조서

공문번호	공문종류	공문명	위 치	면 적(㎡)	비고
17	자연공원	관악산공원	신림.시흥.서당.봉천	20,619,171	
			투산동		

별첨 도면요식와 같음(생략)

제안)

수신 건설부 장관

지목 투 산 동

1. 당초 도시계획 시설(공원)중 관악산 자연공원에 대하여 심
 도고시 하였거 보고합니다.

일부 :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

제안)

수신 서울시장(시 : 문과공보관) 발신 : 시(국)장

지목 관(정)로 지정 소관

2. 관악산 같이 관(정)로 지정 소관하시지 아니하여 주시기
 바랍니다.

가. 관(정)로 지정구분 : 고시

나. 관(정)로 지정구분 : 도시계획 시설(공원) 심도고시

다. 지정구분 : 도시계획법 제14조

첨부 : 1. 고서문 작본 2부 (1부) : 끝.

